

## ■ 정책 동향 ■

##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추진

심희정 변호사 | 유정한 변호사

금융위원회는 2015년 9월 18일 『그림자규제 근절, “이제 그림자규제 안하겠습니다.” - 「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확정·발표」』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.

금융위원회는 소위 그림자규제, 즉 행정지도(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임의적 협력에 기초하여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작용)와 감독행정(금융당국의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법령·규정에 대한 설명, 주의 환기, 이행촉구 등 행정지도가 아닌 영역)에 대한 관리체계가 그간 대폭 정비되었음에도 여전히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, 개선된 행정지도 관리체계도 아직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.

이와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, 금융위원회는 ① 행정지도 등에 따른 제재우려 불식(비조치의견서 취합 및 일괄 회신,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 미이행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 등), ② 감독행정 내부 통제 강화(공문 시행의 필수화, 공문 전결 직위 상향조정, 금융감독원 내부 자체점검체계 마련 등), ③ 행정지도 운영 합리화(금융감독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사전보고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사후통제권한 강화 등), ④ 고유 경영행위(금리, 수수료, 배당, 인사 등)에 대한 개입 금지 명문화, ⑤ 상시 점검·개선 시스템 구축(부당한 행정지도에 대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,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)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상기 방안은 금년 10월부터 시행되고, 이를 구체화한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은 연내 마련되어 제도화 될 예정입니다.

**다운로드:** [그림자규제 근절, “이제 그림자규제 안하겠습니다.” - 「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확정·발표」 보도자료](#)